#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2323 번 호

제출연월일: 2024. 8. 22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

중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이 조직개편 변경사항에 따라 위원 수 변경으로 자 주 개정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# 2. 주요내용

- 가.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(안 제4조제3항)
  -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
    - 구의 소속 공무원 중 각 국의 국장 및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장  $\rightarrow$  구 소속 공무 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
- 나.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7조, 안 제8조, 안 제12조)
- 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- 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  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제3항

### 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3553호, 2024. 7. 25.)

라. 입법예고: 2024. 7. 22. ~ 8. 12.(22일간) / 의견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#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7조 중 "해촉하여야"를 "해촉해야"로 한다. 제8조제3항 중 "통보하여야"를 "통보해야"로 한다. 제12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### 혀 행 개 정 안 제4조(구성) ①・② (현행과 같 제4조(구성) ①・② (생 략) 유)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은 구의 소속 공무원 중 각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구 국의 국장 및 규제개혁 업무 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당 부서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<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후 개정 2020.10.26.> 1. ~ 5. (현행과 같음) 1. ~ 5. (생략) 제7조(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질 |제7조(해촉) -----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 ot ----. 제8조(회의) ①・② (생 략) 제8조(회의) ①・② (현행과 같 음)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·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----- 통보해야 --하다. ④ ~ ⑥ (생 략) ④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<삭 제>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

으로 정한다.

# 근 거 법 규

### □ 「행정규제기본법」

제3조(적용 범위)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1.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
- 2. 형사(刑事), 행형(行刑)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
- 2의2. 과징금.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- 3. 「국가정보원법」에 따른 정보·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
- 4. 「병역법」.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. 「통합방위법」. 「예비군 법」, 「민방위기본법」,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및 「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징집·소집·동원·훈련에 관 한 사항
- 5. 군사시설,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
- 6. 조세(租稅)의 종목・세율・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(公表),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, 기존규제의 정비,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# 2. 미첨부 사유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규제개혁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 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#### 3. 작성자

○ 소 속: 기획예산실

○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
○ 성 명: 이혜진

○ 연락처: (052)290-3092